

2024년 4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불법 현황

- ▶ 김 양식장 무기산 보관·적재·사용, 양식장관리선 승인 외 사용 조업
- ▶ 실뱀장어안강망 무허가조업, 구획이탈 조업
- ▶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등) 무허가조업 및 어구초과부설

중점 확인사항

[해상]

- ▶ (김 양식장) 무면허 양식, 불법 활성처리제(무기산 등) 보관·사용 점검
- ▶ (실뱀장어안강망) 허가 유무 확인, 구획이탈 조업 및 어구 규모 위반 점검
- ▶ (근해·연안개량안강망) 어구 초과부설 및 사용 여부 점검
- ▶ (각망) 허가 유무 확인, 구획이탈 조업, 어구 초과부설 점검

[육상]

- ▶ (항·포구) 전남·전북지역 실뱀장어 불법포획·유통(양만장), 출어선 불법어구 적재, 김양식장 불법 활성처리제 보관·사용 확인, 어선 불법 증개축 점검
- ▶ (수산시장) 전통·수산시장 내 불법어획물(금지체장 위반 등) 유통 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 ▶ 「수산업법」제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
* (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수산업법」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 (사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불법 어구적재
* (사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불법 활성처리제 사용·보관 등)
* (사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어업 취소
-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무면허(면허구역 이탈 양식장 설치, 조업 등)
* (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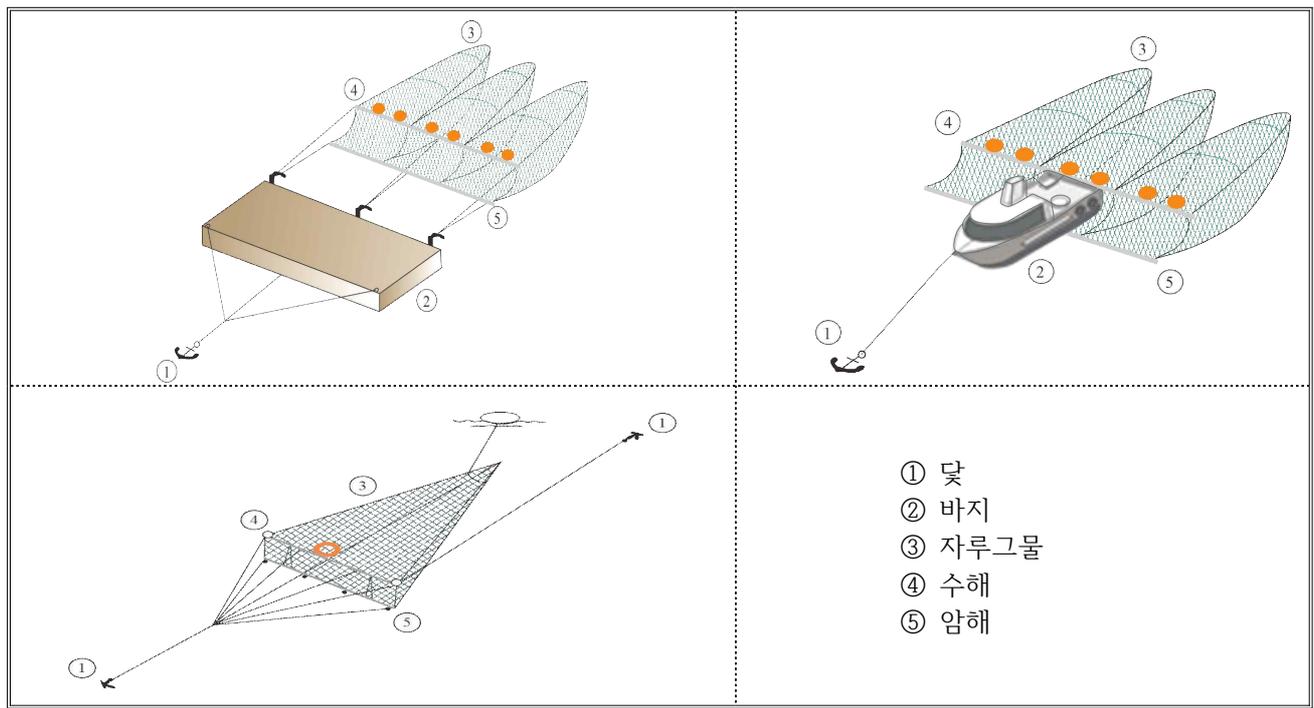
4.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카.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카-1 및 부도 카-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이 경우 바지는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 나)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압해로 구성된 어구(수해·압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압해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 다)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1)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카-1과 같다.
 - 가)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 나)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 다) 1)에 따른 수해·압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부도 카-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2.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다. 근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타-1부터 부도 타-3까지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뜬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帆布: 돛천)를 달아 그물이 상하 또는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다)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 1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3. 연안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뜬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또는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뺨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3과 같다.
 -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뚝대 또는 뺨침대)를 투하한 뒤 쥘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법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기상특보 발효 시



(기존)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개정)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제한

▶ 조치 위반시 어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어업허가 정지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항 생략> (시행 2022.10.18.)



구명조끼 등의 착용



(기존)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로 출원 갑판에 있는 승선원은 구명조끼 착용

(개정) 기존 +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어선의 승선원은 구명조끼 상시착용(2인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시행 2025.10.19.)

▶ 선장에게도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 부과(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항 생략>



과태료 부과



(기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

(개정) 기존 +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선장

▶ 구명조끼 착용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 90, 2차 위반 150,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규정추가
제3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0. 18.>
1. - 3. (생략)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2025년 10월 19일부터
소규모 조업어선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공포 '22.10.18. 제24조 및 제32조 공포 3년 후 시행)에 따라 '25.10.19부터는 구명조끼·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 되고, 선장에게도 승선자의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부과(과태료 300만원 이하)됩니다.